

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73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6. 19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감사 또는 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에 대한 고발 기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.
- 이에 거짓증언에 대한 고발 시기의 적절성 및 절차 등을 감안하여 고발 기한을 명확화·현실화함에 따라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사 및 조사 실시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 기한을 거짓증언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함(안 제12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현행조례 : 붙임 3

6. 참고자료 : 붙임 4

7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※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'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' 생략

【붙임1】 일부개정조례안

**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한다.”를 “하되, 거짓증언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2】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고발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<u>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고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하되,</u> <u>거짓증언이 있는 날부터 60일</u> <u>이내에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